

수신 농촌진흥청장(농자재산업과장)
(경유)

제목 농약관리법 관련 질의(타시군구 창고시설 사용 여부)

1. 성동구 지역경제과-5279호(2018.2.23.)관련입니다.
2.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농약판매업 등록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질의가 있어 송부하니 검토하시고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련법 및 질의내용

- 1)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약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<별표1>의 「제조업·원제업·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 기준」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.
- 2) 이와관련 A구청에 농약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업체에서 창고시설을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, 농촌진흥청에 기 등록한 농약제조업의 창고시설(타시 도에 위치)을 A구청에 농약판매업 창고시설로 신청했을 시, 창고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

나. 검토의견

1) 갑설

농약판매업 시설기준에서 <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>이라고 정하고 있고, 타지역에 설치된 농약제조업에 대한 창고를 임대 등 사용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정하여지지 않았고, 타 시도에 위치한 창고의 평시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등록하려는 시군구청 내에 창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

2) 을설

농약관리법 시행기준 제6조(제조업등의 인력,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) <별표1>에 따른 판매업 창고 시설기준에서 타지역에서 등록된 농약제조업 창고시설을 사용하면 안된다라고 규정해 놓지 않았기에 타지역 창고시설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견

다. 우리시(구) 의견 : 갑설.

붙임 관련법 1부. 끝.

서 울 특 별



주무관

천소영

도시농업지원팀 박세황
장

도시농업과장

전결 03/02
代 박복수

협조자

시행 도시농업과-3463 (2018.3.2.) 접수 ()
우 045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/
전화 02-2133-5380 / 전송 02-768-8945 / cheon3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

○ 농약판매업 등록 관련법

<농약관리법>

- 제3조(영업의 등록 등) ① 제조업·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(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·시설·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.

<농약관리법 시행규칙>

제6조(제조업등의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)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·원제업·수입업 및 판매업의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[별표1]

제조업·원제업·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(제6조 관련)

4. 판매업의 등록기준

가. 인력

1)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관리인 1명 이상을 둘 것. 다만, 용기·포장의 크기가 50㎖(g) 이하이면서 저독성(별표 3의5 제1호의 저독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인 농약(이하 "소포장농약"이라 한다)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농약에 관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판매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.

가) 행정기관, 농업에 관한 국·공립의 시험·연구·지도기관이나 국·공립농약 등 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나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농화학기술사,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 (종전의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농화학기능사,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,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한다)의 자격을 소지한 자

다) 제조업·원제업·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(소포장농약 판매업 종사자는 제외한다) 또는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(1)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

(2) 인사기록카드에 농약등 관련 업무 실적이 있는 자(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만 해당한다)

(3) 사업소득세 납부 증명이 있는 자

나. 시설

1) 농약등을 의약품·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·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

2)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. 다만, 용기·포장의 크기가 50㎖(g) 이하이면서 저독성인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가) 사람의 거주장소, 의약품·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

나)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

다)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

다.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점포 및 보관창고 소재지가 아니어야 함.